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12호
2. 발 의 자 : 이호대 의원 외 13명
3. 발의일자 : 2020. 10. 15.
4. 회부일자 : 2020. 10. 26.

II. 제안이유

- 코로나19사태 이후 사람의 건강관리와 이에 필요한 조치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방역업무 및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마련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소속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제6호의2).

#### **Ⅳ.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 타 :**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20. 10. 29 ~ 11.5)**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이호대 의원 등 14명의 의원에게 의안번호 제1912호로 발의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유행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방역 및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유행에 따라 학교 등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6의2호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방역 및 돌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감염병 확산의 방지와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과 비공무의 차별 없이 예방접종을 지원하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sup>1)</sup>

1) 교육청은 이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020년 하반기 학교 방역물품 구입비 등 지원 계획」에 따라 보건교사와 돌봄 담당 구성원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한 바 있음.

(단위: 교, 명, 천원)

## 나.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공립과 사립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 근무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17, 2020.11.10.).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방역과 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최근 교육부의 「교직원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안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직원 대상 무료예방접종의 경우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에 따라 수립·마련한 기본계획 및 시책의 범위 안에서 교육청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의 직무상 행위로서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의 기본계획 등이 없이 교육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교육감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

구 분	학교 현황				예산 재배정 내역			
	학교수	학급수	보건 교사수	에듀케어 및 돌봄전담사 인원	방역물품 구입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계	
학교	국립 (610-01)	12	297	12	-	24,688	420	25,108
	공립 (620-03)	1,227	29,214	971	2,777	2,427,628	131,180	2,558,808
	사립 (620-10)	896	11,996	365	281	998,788	22,610	1,021,398
	민간이전 (320-01)	30	599	-	-	47,920	0	47,920
	계	2,165	42,106	1,348	3,058	3,499,024	154,210	3,653,234
교육지원청 (210-01)					64,000	0	64,000	
합계	2,135	41,507	1,348	3,058	3,563,024	154,210	3,717,234	

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의견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결국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그 범위에서 교육청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참조).

따라서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범위에 대한 검토**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무엇에 대한 예방접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예방접종의 대상성이 다소 포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질병관리본부, 제2판)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종’의 예방접종 종류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필수예방접종’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예방접종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당해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으로 지원 예방접종에 대한 범위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17, 2020.11.10.)

- 다만 동 조례의 예방접종 지원을 포함한 교육청의 후생복지사업은 교육

감이 행·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바, 동 개정조례안의 예방접종 대상성에 대한 결정 또한 교육감이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굳이 예방접종의 종류까지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3.]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신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

<교육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 내용>

교직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질의회답

【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교방역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검토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배경)

- '코로나19'로 보건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방역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계절성 인플루엔자(매년 11월 유행)가 올해도 유행할 경우 학교방역, 대입수능 등에 차질 발생 우려
- 이에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학교방역을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도래하는 11월 이전에 교직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질의 내용)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제2조의2 등에 의거,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근거로 자체 또는 학교 예산을 사용하여 교직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3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2020. 10. 7. 교육부장관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에 따라 수립·마련한 기본계획·시책의 범위 안에서 교육청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0. 10.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